

2020년도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8. 12.(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6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66건(안전번호 제2020-92004호~9268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92004호~92007호는 민원인이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일본 특촬물, 애니메이션 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92008호는 게시물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불법 복제물이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불법복제물 전송이 다시 개시될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1,55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0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98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0-47602호~4858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0개, 총 98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31건(안건번호 제2020-2499호~2529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30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0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6개 안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거절 사실이 없는 1개 안건(7개 안건은 부결 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6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회의록 6쪽에 민원인이 신고한 게시물 제목, 9쪽에 밴드명, 10쪽에 사행성 사이트 주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게시물 제목, 밴드명 등을 공개할 경우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 제목, 밴드명, 사행성 사이트 주소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2호 안전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모두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TV도쿄’, ‘tvN’, ‘TV조선’, ‘미국 FOX’, ‘Autodesk Inc.’, ‘일본 NTV’, ‘미국 CWTV’, ‘이십세기폭스’,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MBN’, ‘월트디즈니컴퍼니’, ‘위너브러더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위원, D 위원, B 위원, A 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56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2004호~9200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특촬물, 애니메이션 복제물이 제공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 C 위원: 어떤 저작물을 특촬물이라고 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로봇과 사람이 함께 출연하고 특수촬영이 포함된 여러 장르 중 하나임. 위키피디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위키피디아에서 '특촬물'을 검색해서 보여주면서)위키피디아에 “특촬물(일본어: 特撮物, とくさつもの 도쿠사츠모노)은 특수촬영물(特殊撮影物)의 준말로써, 말 그대로 특수촬영한 매체를 통칭하며 일본어 特撮(とくさつ 도쿠사츠)에서 온 말이다. 주로 일본의 작품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고질라, 울트라 시리즈(울트라맨), 슈퍼전대 시리즈, 가면라이더 시리즈, 멘탈 히어로 시리즈, 토미카히어로 레스큐포스, 긴급출동! 레스큐파이어, 초성함대 세이저X, 무협 등이 있다. 사람이 특별하게 제작한 인형 옷을 입거나 분장하여, 미니어처로 이루어진 무대장치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지구용사 벡터맨,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등이 있다”고 되어 있음.
이어서 검토보고 드리겠음. 심의대상 게시물 중 ‘▲▲▲▲▲▲ ▲▲▲▲’

이 특촬물이고 '■■■ ■■■ ■', '○○○ ○○○○○', '★★ ★★ ★★ ★★ ★★★★★ ★★★★★ ★'은 일본 애니메이션임.

(순번 1번 '■■■ ■■■ ■'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한 화 전체를 게시한 것으로 총 23분 50초 분량임.

(순번 2번 '○○○ ○○○○○'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우리말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24분 30초 분량임.

(순번 3번 '★★ ★★★★★ ★★ ★★★★★ ★★★★★ ★'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우리말 자막이 영상에 포함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순번 4번 '▲▲▲▲▲ ▲▲▲'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한 화를 전부 제공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92004호~92007호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인용, 공정이용 등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D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2004호~9200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92008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블로그 운영자가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더 이상 제공되고 있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면 화면과 같이 “비공개 글입니다.”라고 팝업창이 확인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92008호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비공개로 전환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게시물이 삭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복제물 전송이 다시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다시 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이견 없으며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는데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2008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만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92009호~9268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92009호~9268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2009호~9268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92006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92004호~92007호, 제2020-92009호~9268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7602호~48581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6쪽부터 3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499호~2529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나머지 30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0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6개 안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거절 사실이 없는 1개 안전(7개 안전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19.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